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5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송옥주 · 이병진 · 한민수
홍기원 · 이수진 · 박해철
서미화 · 황명선 · 이원택
임미애 · 박 정 · 최혁진
김현정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생 조합, 보건·의료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도농간 직거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제약요인이 많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와 농어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관련 조

합을 육성·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생산하여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생

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7조).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생산하여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식품”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4. “생산자”란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직접 생산하여 생활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협동조합의 역할 및 책무) 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농 교류와 지역균형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협동조합 및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
 3. 생활협동조합 인력 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및 생활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5. 생산자 육성 및 지원 방안
 6. 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먹거리 및 식생활교육 계획
 7. 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8. 생활협동조합 판매장 설립 등 물류사업의 지원 시책
 9. 생활협동조합 판매사업의 홍보 지원
 10.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 및 식품 구입·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11.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도별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현황과 성과분석
4. 시·도별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생활협동조합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 등) ①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생활협동조합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생활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생활협동조합의 지원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하에 지역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원

제10조(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생활협동조합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4.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6.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생활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을 발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생활협동조합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생활협동조합 육성 기반조성

제13조(생활협동조합제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생활협동조합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생활협동조합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6. 생활협동조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8.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식생활교육 지원
9. 생산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생산자협회) ①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 생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생산자 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5. 생산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협동조합 및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 이 법에 따른 정관의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생

활협동조합이나 협회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제20조를 위반하여 생활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